

판매서비스세(SST)

2014년 상품서비스세(GST)법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2018년 판매세법과 2018년 서비스세법 및 동법 하위규정들이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판매세

2018년 판매세법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제조 상품에 대해 수입 시 또는 등록된 제조업자가 판매 또는 달리 처분하는 시점에 판매세가 부과된다. 말레이시아에서 시행되는 판매세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완제품과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단일단계 세금이다. 판매세는 등록된 제조업자에 의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과세대상 상품에 대해 상품이 판매, 판매 외 방식의 처분, 또는 상품 제조 원료로의 사용 외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시점에 부과된다. 수입 상품에 대한 판매세는 상품의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및 통관 완료에 따른 상품 반출 시 부과된다. 2018년 판매세법 제12조에 따라 12개월 내에 매출액이 50만 링깃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등록이 요구된다. 판매가가 50만 링깃 이하인 과세대상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2018년 판매세법에 따라 부여되는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동법 제14조에 따라 자유 의사에 따라 등록을 선택할 수 있다. 협력업체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12개월 내에 해당 사업의 총 인건비가 50만 링깃을 초과하는 제조업자는 2018년 판매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요구된다.

판매세율

판매세는 일반적으로 10%이며, 특정 비필수 식품, 알코올 음료, 연초/궐련 담배 및 건축 자재에 대해서는 5%, 특정 석유 제품 및 자동차 오일은 개별 세율로 과세된다.

서비스세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세는 "과세대상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대해 단일 단계에서 부과되는 간접세의 한 형태이다. 서비스세는 2018년 서비스세 규정의 첫 번째 별표(First Schedule)에 따라 장관이 정한 과세대상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다. 2018년 서비스세법(STA 2018)은 지정지역, 자유지역, 허가된 창고, 허가된 제조창고와 공동개발지역(Joint Development Area, JDA)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전역에 적용된다.

과세대상 서비스

과세대상 서비스는 2018년 서비스세 규정의 첫 번째 별표(First Schedule)에 다양한 범주별로 수록된 모든 서비스이다.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각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모든 과세대상자는 등록이 요구된다. 대상 범주는 숙박업, 식음료 사업자, 나이트클럽, 댄스홀, 헬스 앤 웰빙센터, 사교클럽,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스포츠관련 베팅 및 게임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및 기타 보험, 통신, 주차장업자, 광고업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자이다.

서비스세 부과

서비스세는 등록된 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말레이시아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세대상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된다. 서비스세는 등록된 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해 지불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세는 2018년 서비스세법(STA 2018)에 따라 수입 및 수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서비스세율

서비스세율은 2018년 서비스세율(세율) 명령에 따라 고정되어 세율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비스 세율은 2018년 서비스세법(STA)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과세대상 서비스의 가격 또는 보험료, 베팅 및 게임 가격 등의 6%이다.

신용카드 및 일시불카드에 대한 서비스세율

신용카드 또는 일시불카드(Charge Card)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비스세율은 주거래카드와 추가 카드에 대해 매년 RM25이다. 서비스세는 카드 발급일과 그로부터 매 12개월 또는 그 일부마다 또는 카드 갱신일과 그로부터 매 12개월 또는 그 일부마다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mysst.customs.gov.my/>을 방문하십시오.

자료: 말레이시아 관세국(Royal Malaysia Custom) - www.customs.gov.my

국내소비세

국내소비세는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따라 수입상품과 국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부과된다. 과세대상상품은 2004년 국내 소비세령에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상품	세율
- 자동차 4륜구동 차량 - 오토바이 - 음료, 주정 및 식초 - 담배 및 대체 담배제품	65% - 105% 60% - 105% 20% - 30% RM1.10 (US\$0.25) + 15% - 100%ABV 리터당 RM 450 (US\$103) 개비당 RM0.40 (US\$0.09) - RM 400 (US\$92.00)

자료: 말레이시아 관세국 (Royal Malaysian Customs) - www.custom.gov.my

자본공제율

자본공제는 적격 자본적 지출에 대해 주어진다. 초기공제는 단지 1회에 한해주어지지만 연간공제는 정액법에 의해 매년 주어진다. 일부 항목에 대한 공제는아래 표에 예시되어 있다. 설비 및 기계류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는내국세 수입국(IRBM)에 당해 적격 품목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한다.



Capital Expenditure	Initial Allowance	Annual Allowance
- 산업용 건물 - 일반 설비 및 기계류 - 중기계류 및 자동차 - 컴퓨터 및 IT 장비 - 환경관리장비 - 기타	10% 20% 20% 20% 40% 20%	3% 14% 20% 20% 20% 10%

자료: 내국세 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 www.hasil.org.my